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제 3순환 민사서류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모의고사에 응시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 중 3회차 등기답안 및 4회차 사해행위 답안 관련,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수업이 종료된 관계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 파일과 같이 다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다시 수정한 내용으로 교체하여 올려두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수정한 내용)

1. 3회차 등기... 답안 청구취지

*** 수정 전

1.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2 대 2,000㎡에 관하여'원고와 소외 서호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 2025 카단 3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구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2.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중** 대지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답안례가 틀린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기본서 등기파트 청구취지 기재례(이번 개정판 256-장래이행 청구, 작년 개정판 242면)나 509페이지 4. 종합결론 - 위 사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례 ...를 참고해보면, 아래처럼 피고...는이 맨 앞으로 오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후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2 대 2,000㎡에 관하여'원고와 소외 서호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 2025 카단 3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구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23 5 12.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대지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4회차 사해행위... 답안

가. 청구취지 수정

*** 수정 전

1. 피고 이철수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까지연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철수와 피고 이수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24. 9.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철수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이수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9. 17. 접수 제189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이종찬은 같은 등기국 2025. 2. 17. 접수 5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답안례가 틀린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별지목록 기재 부분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아래처럼 기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 후이와 관련 금년 개정판 교재 390면, 작년 개정판 376면 내용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수정 후

1. 피고 이철수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까지연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이철수와 피고 이수용 사이에 2024. 9.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철수에게,
 - 1) 피고 이수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9. 17. 접수 제189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이종찬은 같은 등기국 2025. 2. 17. 접수 5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청구원인 1. 물품대금 ...중 일부... 수정

*** 수정 전

2) 그리하여 원고는 위 이철수에게 위 약정대로 위 냉장고 50대를 모두 인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철수는 위 대금 중 2,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이철수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하 생략

(위 답안례는 사실 사해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앞 부분 피보전채권인 물품대금 청구 사건 지연이자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아래처럼 기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후

...

2) 그리하여 원고는 위 이철수에게 위 약정대로 위 냉장고 50대를 모두 인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철수는 위 대금 중 2,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이철수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는 변동없음